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22호 2023. 2. 16.(목)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40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 1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3
- 사천시 고시 제2023-20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238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 사천시 공고 제2023-251호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 18
- 사천시 공고 제2023-26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 사천시 공고 제2023-262호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8
- 사천시 공고 제2023-274호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9
- 사천시 공고 제2023-276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0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훈령 제440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16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획예산담당관의 평가혁신팀의 분장사무란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청원법 관련 사무(청원서 접수·분류,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통계관리 등)  
별표 2의 농축산과의 동물복지팀의 분장사무란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농축산과의 가축방역팀의 분장사무란 제24호를 같은 표 농축산과의 동물  
복지팀의 분장사무란 제15호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사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을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②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사천시 행정자료실운영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사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안전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안전도시국장”을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안전과장, 민원교통과장, 도로과장”을 “소관업무 부서장, 교통·도로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⑤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관업무 국장·부서장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고시 제2023-18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6일

## 사 천 시 장

### 1. 하천점용 현황

점용자	성 명	사천시장 (환경보호과장)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하천명		죽천천(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 1446-65번지		
	면 적	27.36㎡		
	기 간	허가일로부터 5년		
	목적 및 개요	가설건축물(이동식 화장실) 설치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 신청사유 : 하천점용허가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고시 제2023-20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6일

## 사 천 시 장

###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내용

지역명	위치	지정내용			지정 사유	관리 기관	비고
		유형	등급	면적(m <sup>2</sup> )			
곤양 고등학교 주변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1194번지 일원	붕괴 위험 지역	D	2,196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 유실 및 낙석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및 정비하고자 함.	사천시장	

### 2.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범위(붙임 지정 지형도면 참고)

### 3.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의 현황

- 사면 L=200m, H=10~20m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4.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지역명	사업 시기	사업예산(백만 원)	사업 내용	비고
곤양고등학교 주변	2023년 이후	500	사면 정비 및 보강공사 L=200m, H=10~20m	

※ 사업 시기 및 사업예산은 현장 여건과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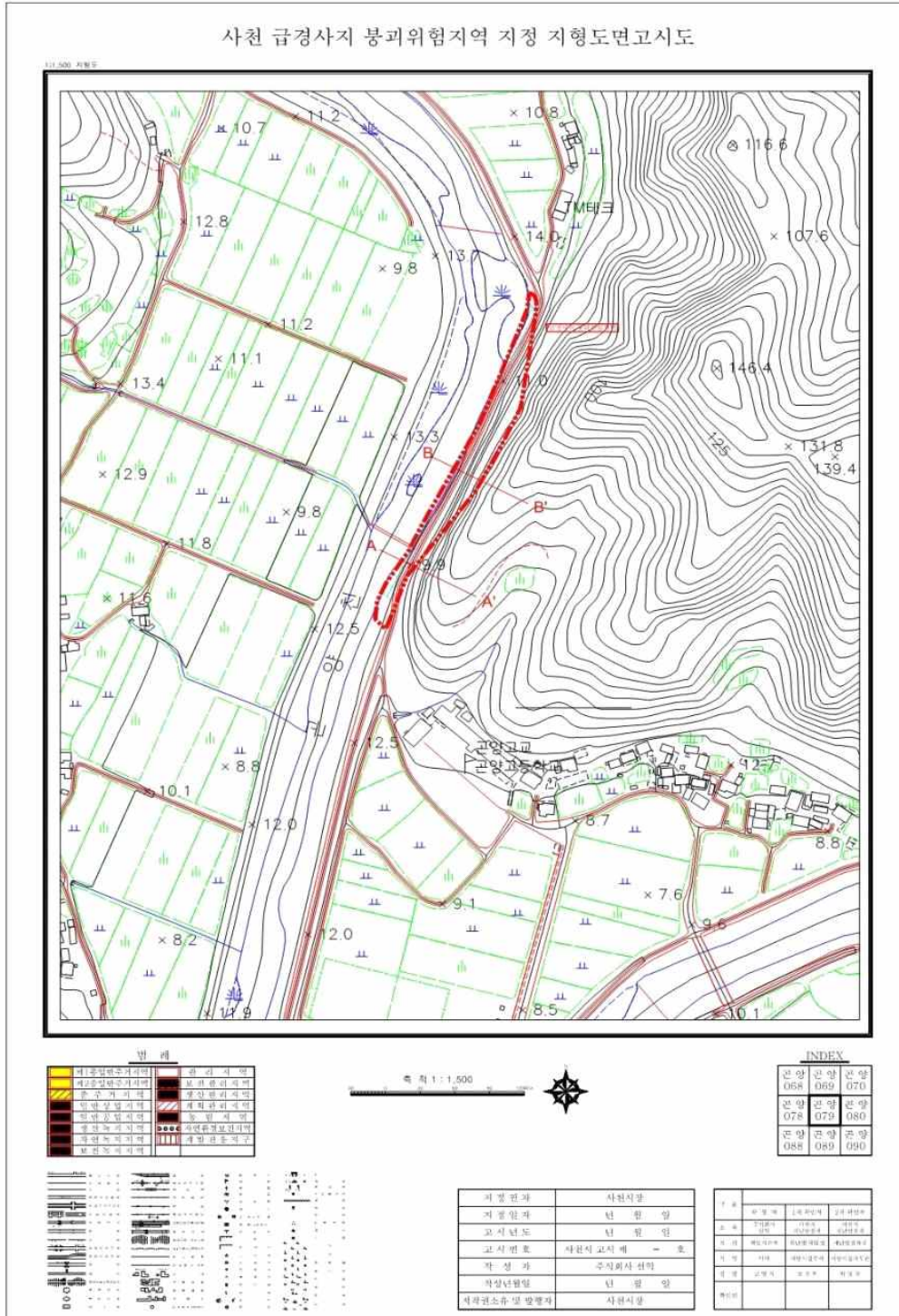
## 6.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2023. 2. 16.

## 7. 문의처: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055-831-3316)

# 사천 시 공 보

제822호

## □ 곤양고등학교 주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형도면 고시도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토지편입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	곤양면 서정리	1193	도	907	743		국 (국토교통부)
2	곤양면 서정리	1194	구	1,930	1,453		국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2,837	2,196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공고 제2023-238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 결과(시·군민 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안 제2조제1호)
- 나. 보험 가입대상 외국인 명확화(안 제3조)
- 다. 보장범위를 보상범위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라. 보상범위에서 12세 이하인 사람의 사망을 삭제(안 제4조제1항 제5호)
- 마. 보험정보 공고 의무를 신설(안 제4조제2항)
- 바. 보험금 청구 행정적 지원을 신설(안 제5조제2항)
- 사. 보험금 지급현황 제출 의무를 신설(안 제7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12, FAX: 831-6036)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 결과(시·군민 안전보험 운영 실태 성과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안 제2조제1호)

나. 보험 가입대상 외국인 명확화(안 제3조)

다. 보장범위를 보상범위로 변경(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라. 보상범위에서 12세 이하인 사람의 사망을 삭제(안 제4조제1항제5호)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마. 보험정보 공고 의무를 신설(안 제4조제2항)
- 바. 보험금 청구 행정적 지원을 신설(안 제5조제2항)
- 사. 보험금 지급현황 제출 의무를 신설(안 제7조제2항)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
    - 가) 기 간: 2023. 2. . ~ 2023. 3. .(20일 이상)
    - 나) 제출의견: 없음, 건
    -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험을”을 “보험 또는 공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의 제목 “(보장범위)”를 “(보상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장범위”를 각각 “보상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부상 또는 사망”을 “부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장범위”를 “보상범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u>보험</u>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재난”이란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p> <p>제3조(보험 가입대상) <u>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u>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 ----- ----- <u>보험 또는 공제</u>를 -----.</p> <p>2. (현행과 같음)</p> <p>3. -----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3조----- -----.</p> <p>제3조(보험 가입대상) <u>이 조례에 따른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 ----- ----- -----.</p> <p>1. 「<u>주민등록법</u>」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사람</u></p> <p>2. 「<u>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u>」 제6조제1항에</p>



제4조(보장범위) 시장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인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6. (생략)

<신설>

제5조(보험금 신청) 제4조에 따른 보장범위에 해당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 등) ① -----  
-- 보상범위-----  
-. -----  
----- 보상범위-----  
-----.

1. ~ 4. (현행과 같음)
5. -----  
-----  
-----  
- 부상

6.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 신청) ① ----- 보상범위-----  
-----  
-----  
-----.

②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제7조(보험금 지급) (생략)

<신설>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공고 제2023-251호

[  ] 통행의  
금지·제한  
[  ] 차량의 운행 제한 ]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 통행의  
금지·제한  
[  ] 차량의 운행 제한 ] 을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사천시장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명	19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전 차량	구간	곤명면 마곡리 432-6번지 일원
기간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유 : 완사(마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마곡교 재가설

그 밖의 사항

- 통제방법: 차량 전면통제[2차로]
- 연락처: 055-831-3317(사천시 재난안전과)

첨부서류: 위치도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 위 치 도 【완사(마곡) 자연재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위 치 도 【가도 설치계획(우수기 가도 철거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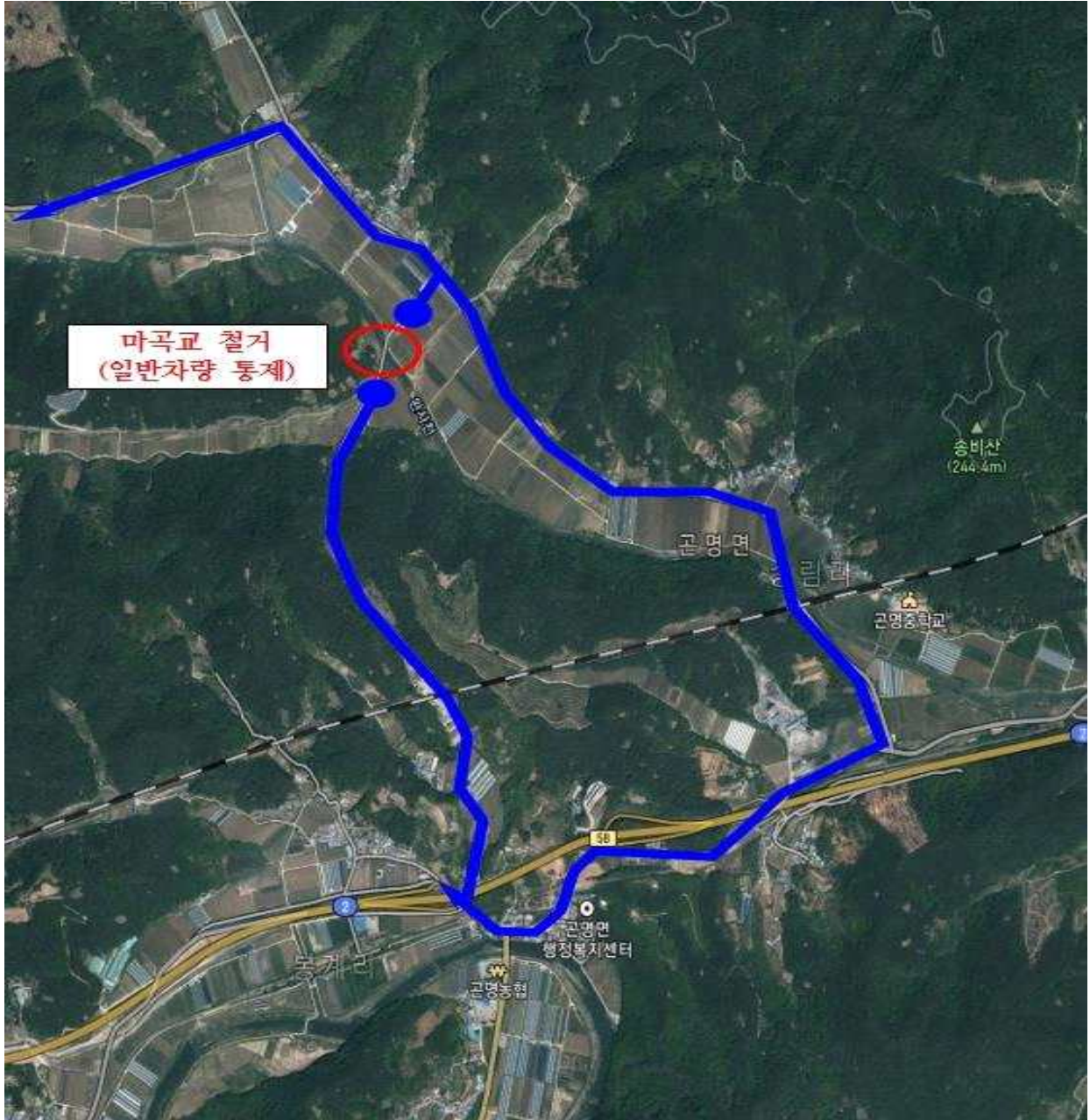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우 회 노 선(일반차량 및 시외버스 등)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사천시 공고 제2023-26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현안업무와 역점사업 추진으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5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일수 확대(안 23조제11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10일, 신설)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10일 → 15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20일, 변동사항 없음)
- 재직기간 30년 이상(20일, 변동사항 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나. 가족돌봄휴가 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23조제12항)

-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2일 → 10일)
- 가족돌봄휴가 범위 확대(자녀 → 자녀 또는 손자녀)
- 수능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능시험 당일 1일 휴가 부여(추가)
- 자녀 군 입영행사(자녀 → 자녀 및 형제자매)로 확대,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 1일 추가 부여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 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0,  
FAX : 831- 6021)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사천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현안업무와 역점사업 추진으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5년이상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일수 확대(안 제23조 제11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10일, 신설)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10일 → 15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20일, 변동사항 없음)
- 재직기간 30년 이상(20일, 변동사항 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나. 가족돌봄휴가 범위 확대 및 구체화(안 제23조 제12항)

-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2일 → 10일)
- 가족돌봄휴가 범위 확대(자녀 → 자녀 또는 손자녀)
- 수능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능시험 당일 1일 휴가 부여(추가)
- 자녀 군 입영행사 (자녀→자녀 및 형제자매)로 확대,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 1일 추가 부여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2. 16. ~ 2023. 3. 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제23조제1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휴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을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제15항 및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⑭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⑰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⑩ (생 략)</p> <p>⑪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p> <p><u>&lt;신 설&gt;</u></p> <p>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u>10일</u></p> <p>2. 3. (생 략)</p> <p>⑫ <u>자녀가 있는</u>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u>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u> <u>가</u>를 받을 수 있다.</p> <p>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u>공식 행사</u> 또는 <u>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u></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과 같음)</p> <p>⑪ ----- ----- ----- ----- -----.</p> <p><u>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u></p> <p>2. ----- <u>15일</u></p> <p>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⑫ <u>공무원</u>----- ----- -- <u>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u> ----- -----.</p> <p>1. ----- ----- ----- ----- ----- <u>휴업·휴원·휴교</u> <u>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u></p>

우

<신 설>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신 설>

- ⑬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 또는 손자녀---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 설>

⑭ · ⑮ (생 략)

<신 설>

⑭ 자녀 및 형제자매의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단, 장거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1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⑮ · ⑯ (현행 제14항 및 제15항과 같음)

⑰ 수능 자녀를 둔 직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수능 자녀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 관 련 법 규

###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21. 11. 30., 2021. 12.  
31.>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12. 31.>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 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2021. 11. 30.>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2019. 12. 31., 2021. 12. 31.>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3. 5. 31., 2018. 12. 18., 2019. 12. 31.>

- ⑧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0. 20.>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1. 11. 3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8로 이동 <2019. 4. 16.>]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공고 제2023-262호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사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도시계획 목표연도: 5년 기준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3조)

- 위 원 수: 25명 이내(위원장: 부시장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2년(연임 가능)
- 위원구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사천시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국장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 주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마.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규정

###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85, FAX: 831-6044)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우주항공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사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스마트도시계획 목표연도: 5년 기준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3조)

- 위 원 수: 25명 이내(위원장: 부시장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임기: 2년(연임 가능)

- 위원구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사천시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국장 및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 주민, 스마트 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마.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규정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도시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2. . ~ 2023. 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안 제4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함
    - 최초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계획수립 용역비 500,000천원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회의 개최 시 회의 참석수당 지급
    - 7,500천원 = 위원 25명 + 연 3회 + 1인당 100천원(2시간 이내)\*
-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의거(행정안전부)

2) 추계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출	시비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소계(a)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세입	지방세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의존재원						
	소계(b)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다. 부대의견: 없음

우 주 향 공 과 장 이 숙 미 (인)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재원조달	7,500	7,500	7,500	7,500	507,500	537,5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500	7,500	7,500	7,500	507,500
	지방세	7,500	7,500	7,500	7,500	507,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협의회 회의수당 지급: 자체수입(지방세)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우 주 향 공 과 장 이 숙 미 (인)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사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② 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④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제6조(연구·개발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사천시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사업시행자

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마.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 도시조성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규

###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공고 제2023-274호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1) 위원 수 확대(30명 → 35명) 및 당연직 위원 추가(항공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공개모집 절차 추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23,  
FAX : 831- 6011)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 1. 의결주문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1) 위원 수 확대(30명 → 35명) 및 당연직 위원 추가(항공경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 2) 공개모집 절차 추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2. 16. ~ 2023. 3. 8.(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의 예산 편성과정”을 “사천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 관내”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 관내에”를 “시에”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인터넷”을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민들”을 “주민”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인터넷”을 “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시”를 “시장은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명”을 “3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읍·면·동장이나 시민단체 대표의 추천 등에 의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3.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9명

⑥ 제5항 제3호에 따라 위촉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모집기간 및 선정인원 등은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u>시의 예산 편성과정에</u>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사천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u>-----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시 관내</u>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li> <li>2. <u>시 관내</u>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li> <li>3. (생략)</li> </ol>	<p>제2조(용어의 정의)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u>-----</li> <li>2. <u>시에</u> ----- -----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4조(시장의 책무) <u>시장</u>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 ----- -----</p>
<p>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p>	<p>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p>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의견 제출) ① (생략)

②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에 한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천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 시 -----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 주민-----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정한다.

제9조(결과 공개) -----  
----- 시 -----  
-----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 -----  
-----  
-----  
--.

② -----  
----- 35명 -----  
-----.

③·④ (생략)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읍·면·동장이나 시민단체 대표의 추천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 6명

<신설>

⑥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업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다음 -----  
-----  
-----.

1. 2. (현행과 같음)

3.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9명

⑥ 제5항 제3호에 따라 위촉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모집기간 및 선정인원 등은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관 련 법 규

###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8. 3. 27.]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사천시 공고 제2023-276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행복도시 사천을 구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3조)
- 2)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안 제4조)
- 3)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6조)
- 4)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9조)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다.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 1)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11조)
- 3)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4)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비밀엄수의 의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5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0, FAX: 831- 6011)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 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 1. 의결주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행복도시 사천을 구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3조)
- 2)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안 제4조)
- 3)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6조)
- 4)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제9조)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다. 유치활동 및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 1)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11조)
- 3)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4)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라. 비밀엄수의 의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5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예산조치: 제2차 추경에 반영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2. . ~ 2023. 3. .

- 제출의견: 건

- 반영여부: 해당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사천시(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사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항공경제국장, 문화관광수산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제11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유치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22호

**제15조(포상)** 시장은 유치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9. 7. 27., 2014. 3. 11., 2021. 6. 8.>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9. 5. 29.]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20. 6. 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